

문서번호	국제교류과-3177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12.07.20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총장 방침 제(658)호

담당자	국제교류과장	국제교육원장	총장
협 조	주무관		

## 2013학년도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급 계획

---

2012. 7

**서울시립대학교**  
(국제교육원)

## 사건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<p>시민참여 고려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</li> <li>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</li> <li>● 전문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</li> <li>● 음브즈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</li> </ul>
<p>법령및기타 고려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법령규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</li> <li>● 기타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   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   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</li> </ul>
<p>타자원의 활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</li> <li>●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</li> <li>● 기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</li> </ul>
<p>관계기관및 단체협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관계기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</li> <li>● 관련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</li> </ul>

# 2013학년도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급 계획

본교에 입학 및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외국인 확대 유치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 I 외국인 장학금 개요

### 외국인 교환학생 대상 수학보조금

- 지급대상 : 외국인 교환학생
- 지급금액 : 월 40만원
- 지급근거
  -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조례 및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
  - 자매대학과 협정 및 협약(상호호혜 원칙)
- 지급방법 : 대상학생 수학기간 중 월별 수학보조금 지급

###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금

- 지급대상 : 외국인 유학생
- 지급금액 :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, 생활보조금 월 40만원
- 지급근거
  -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조례 및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규정
  - 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 및 인원배정 등
- 지급방법 : 성적 및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장학생 선정후 해당 학기 등록금 사전면제

## II 지 급 기 준

### 외국인 교환학생 수학보조금

- 대상대학은 기본적으로 협약 및 상호호혜 원칙으로 선정
- 매 학기 “외국교환학생 지원계획” 방침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학생 확정
- 수학기간 중 월 15일 이상 체류확인 후 개인별 익월 지급

###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

#### 1. 일반 외국인 유학생 장학

##### ○ 학 부

- 전액장학금 : 성적우수자 상위 10%
- 반액장학금 : 차 상위 20%
- ※ 한 학부·과 최대 수혜자는 2명으로 제한 (신입 및 재학생 구별)

##### ○ 대 학 원

- 국어국문학과, 국사학과 석·박사 과정 및 이공계열 박사과정 : 전액장학금  
※ 단, 국어국문학과 및 국사학과 석사과정의 최대 수혜자 수는 5명으로 제한
- 국어국문학과, 국사학과 석사과정 및 이공계열 석사과정 : 반액장학금  
※ 단, 전액장학금 수혜자 제외
- 기타 인문사회계열 석·박사 과정
  - 전액장학금 : 전체 인원 10%범위 내에서 각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 중 대학원장이 승인한 자
  - 반액장학금 : 전체 인원 30%범위 내에서 각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 중 대학원장이 승인한 자. 단, 전액 수혜 대상자 제외
  - 선정방법
    - ▷ 전액장학금 : 박사과정 학생을 우선 선발하되, 성적순으로 선발
    - ▷ 반액장학금 : 전액을 받지 못한 박사과정 학생과 학과별 인원 비율이 높은 석사과정 학생 우선 선발
- ※ 대학원위원회에서 학과별 장학금 지급인원 확정 후, 국제교육원에서 해당 학과에 장학생 추천요청

○ 수혜 제외자

- 계열 또는 학과에 관계없이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.0 미만인 자(신입생 제외)
- 수업연한 초과자 및 수료생
- 교외 장학 수혜자(단, BK21장학금 수혜자는 제외)

## 2.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장학

○ 등록금 : 전액 면제

- 입학 후, 2학기까지는 학점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
- 2학기 이후 : 직전학기 성적B0 이상인 자(단, 2011년 이후 입학한 대학원생은 B+ 이상인 자) 중 정규 학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

○ 생활보조금 : 400천원/ 월

- 입학 후, 2학기까지는 학점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
- 2학기 이후 : 직전학기 성적B+ 이상인 자중 정규 학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

## 3. 우수 이공계 유학생 장학

○ 등록금 : 전액 면제

- 입학 후, 첫 학기 모두 지급
- 2학기 이후 : 직전학기 성적B+ 이상인 자중 정규 학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

○ 생활보조금 : 40만원/월

- 입학 후, 첫 학기 모두 지급
- 2학기 이후 : 직전학기 성적B+ 이상인 자중 정규 학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

※ 월 단위로 15일 이하 국내 체류시, 해당월 생활보조금 미지급

○ 한국어 연수 : 본교 한국어학당 2학기 동안의 등록금 전액 면제

※ 이후 한국어연수 과정에 드는 비용은 개인 부담

### III

## 소요예산

#### □ 산출내역 : 793,800천원

##### ○ 외국인 교환학생 수학보조금

구분	겨울방학 (2013.1~2013.2)	2013년 1학기 (2013.3~2013.6)	여름방학 (2013.7~2013.8)	2013년 2학기 (2012.9~12)
산출내역	400천원×50명×2개월 = 40,000천원	400천원×85명×4개월 = 136,000천원	400천원×50명×2개월 = 40,000천원	400천원×85명×4개월 = 136,000천원
합계	352,000천원			

##### ○ 외국인 유학생 학비 장학금

(단위: 천원)

구분	학부						대학원					
	1학기		2학기		우수유학생		1학기		2학기		우수이공계장학생	
	인원	지급액	인원	지급액	인원	지급액	인원	지급액	인원	지급액	인원	지급액
전액	20	25,000	20	25,000	3	7,500	17	47,600	17	47,600	8	44,800
반액	30	18,750	30	18,750	-	-	55	77,000	55	77,000	-	-
수학보조금	-	-	-	-	3	14,400	-	-	-	-	8	38,400
소계	50	43,750	50	43,750	6	21,900	72	124,600	72	124,600	16	83,200
합계	441,800											

※ 외국인 유학생 학비 장학금은 2012학년도 우리대학 등록금 기준 임

#### □ 예산과목

- 일반회계,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교육원,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, 학생 경쟁력강화, 장학금지급, 일반보상금, 장학금및학자금

### IV

## 행정사항(각 학부·과)

- 외국인장학금과 다른 교내 학비감면장학금의 이중수혜가 없도록 확인 조치

※ 단, 서울시립대학교 장학 규정 제 11조 제 1항 별표1, 2, 3에 정한 바에 따라 장학금의 이중수혜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

- 교외장학금 수혜자에 대하여는 국제교육원으로 통보. 끝.